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 대책)에 따라 비주택을 1인용 주거 공간으로 개량·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현행 ‘오피스텔’에서 ‘기숙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준주택 범위 확대(안 제2조 개정)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로서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후 리모델링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u>요건을 갖춘 오피스텔</u> 을 말한다.	제2조(준주택의 범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서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u>주택</u> 을 말한다.
1. <u>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일 것</u>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u>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u> 가. <u>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u> 나. <u>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것</u>
2. <u>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것</u>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로서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

	<u>에 따른 건축신고 후 리모델링한 경우</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109